

## 2026 공탁법 문제집 개정

### \*\*\* 27 페이지 02번 문제 다음에 다음문제 추가

#### 03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③

해설 : ③ 공탁자와 달리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의 공탁에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재외국민등의 주민등록번호)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3 페이지

- 해설** ④ 공탁관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 위 해설부분 아래내용으로 수정

해설 : ④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 47 페이지에 아래문제 추가

14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로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정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공탁서 정정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위 13번 문제 해설참조

\*\*\* 50 페이지 05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06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 및 등록하고 2개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 ③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④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⑤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대공탁·부속공탁)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 \*\*\* 72 페이지 13번 문제 종전해설 다음에 아래내용 추가

... ③ 위 문제출제 당시에는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적용되었으나, 위 문제출제 후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시행 2024. 4. 16)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제4조(공탁관의 확인 철저), 제5조(인가 전 결재), 제6조(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제7조(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제8조(감독사무의 철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및 제2호(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4)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72 페이지 13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4 공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공탁관은 원칙적으로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한 공탁금 출급권자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④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⑤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유권 증명서류를 보증지급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 ⑤

해설 : ⑤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공탁선례 제2-50호),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유권 입증서류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도 없다.

**\*\*\* 77 페이지 09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0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다.
- 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87 페이지 07 문제 해설 중 ⑤해설 아래와 같이 수정**

**(나머지 해설은 그대로 유지)**

종전해설 : ⑤ 법인의 위임 받은 대리인이 100만원 이하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수정해설 : 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은,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

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1)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및 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의 내용은 i)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ii) 공탁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예규 제744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업무처리지침”이 정하고 있다.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번 지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1,000만원 이하라도 적용이 없다. 한편, 예외적으로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도 적용되는데, ⑤번 지문의 경우에는 친구가 법인이 아니고 .000 주식 회사의 신입사원(개인)이므로 결국 법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1,000만원 이하라도 역시 적용이 없다.

또한 2018년 법무사 기출당시에는 ② 번지문은 맞는 지문이었는 데 그 후 예규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가상계좌 입금”에 의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② 번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어 복수정답이 되었다,

**\*\*\* 106 페이지 19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0 일부공탁 및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
- ②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이익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③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④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
- ⑤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

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①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112 페이지 6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07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의 출급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②**

**해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20 페이지 19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0. 이의유보부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 ②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관이어야 하고 공탁자에게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④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 ⑤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124 페이지 2번 문제 중 ③ 지문만 수정**

(2013년 법원사무관)을 (2013년 법원사무관 수정)으로

**종전지문 ③**

③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③ 지문 수정**

③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 124 페이지 3번 문제 중 ⑤ 지문만 수정**

(2014년 법무사)을 (2014년 법무사로 수정)

**종전지문 ⑤**

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⑤ 지문 수정**

⑤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 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25 페이지 4번 문제**

**삭제**

**\*\*\* 125 페이지 5번 문제 중 ① 지문 및 해설 수정**

(2021년 법무사)을 (2021년 법무사로 수정)

**종전지문 ①**

①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① 지문 수정**

① 이렇게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도 할 수 없다.

**종전해설도 아래내용으로 수정**

①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착오로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이제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특례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공탁서 양식에서도 회수제한신고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하단에 회수제한에 대한 안내문구가 추가되었다.

**\*\*\* 131 페이지 13번 문제 정답 및 해설 수정**

**정답 정답없음을 정답 ②로 수정**

**해설 : 종전 해설을 아래 내용으로 모두 수정**

②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착오로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이제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특례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공탁서 양식에서도 회수제한신고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하단에 회수제한에 대한 안내문구가 추가되었다.

**\*\*\* 134 페이지 17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8】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① 공탁자는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탁 자체는 한 것으로 본다.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공탁원인의 소멸’이라 함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및 제3호의 사유(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로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탁물의 회수에 의하여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 \*\*\* 134 페이지 1번 문제 중 ④ 지문 및 해설 중 ④수정

(2019년 법무사)을 (2019년 법무사로 수정)

#### 종전지문 ④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아래와 같이 ④ 지문 수정

④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할 수 있다

#### 종전해설 중 ④만 아래처럼 수정

④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 공탁법 제9조의2).

\*\*\* 138 페이지 23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4.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2025년 법무사)

-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②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공탁규칙 중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152 페이지 05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문41】 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 ②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유효하다.
- ④ 피수용자가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피수용자가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공탁은 효력이 없다.
-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나,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는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수용의 개시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공탁선례 20241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손실보상금 청구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미제출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195 페이지 25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6.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5년 법무사)

- ㄱ.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ㄴ.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 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ㄷ.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 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하더라도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ㄷ

**정답 : ②**

**해설 :** ㄱ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ㄹ. 담보제공 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신소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07 페이지 18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9.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추심권자들에게 배당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배당표에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정답 : ⑤**

**해설 :**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제3채무자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으로 증명서를 교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을 뿐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공탁자(제3채무자)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압류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가 없다

**\*\*\* 208 페이지 맨위 해설 중 □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개정전 □ 아직 압류경합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는다.

개정 후 □ 아직 압류경합이 아니므로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즉, 사례의 경우 2,000만원 중 병의 압류추심과 정의 압류추심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은 집행공탁이고 따라서 집행공탁과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가입이 차단된다, 그러나 2,000만원 중 나머지 500만원(압류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므로 을의 출급청구권만 있는데 여기에 무의 압류추심명령 1개만 존재하고 아직 다른 압류경합이 없으므로 바로 무에게 지급을 하면되고 아직 사유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무의 압류및추심명령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이라 하여도 마친 가지이다. 그 후 또다른 채권자 “기”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들어오고 기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과 무의 압류금액 300만원과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해야만 사유신고를 한다.

.\*\*\* 210 페이지 23번 문제 및 해설 모두 삭제

\*\*\* 210 페이지 삭제한 23번 문제 대신 다음 2문제 추가

23.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추심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4. 공탁관 및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는 불문함)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는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음에 따라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사유신고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채권압류(압류채권자 甲)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압류채권자 甲의 채권자 乙에 의해 이미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된 때에는 위 甲의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보전적 처분으로써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 마찬가지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 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20 페이지 15번 문제 대신 다음 문제 추가**

**16.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가입 차단 효과는 없다.
-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그 송달증명뿐만 아니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금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금청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 221 페이지 1번 문제 중 정답을 수정하고 해설추가

정답①, ⑤ 를 ..... 정답 ①로 수정

해설 : ① 공탁선례 202311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위 ①의 경우처럼 선례변경으로 집행공탁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와 체납압류만 경합하고, 아직 민사 본 압류가 없으므로 ③처럼 민사집행법 248조 공탁은 할 수 없고 압류가 경합이므로 ②처럼 일부공탁만 할 수 없다.

**\*\*\* 225 페이지 삭제한 07번 문제 대신 다음 문제 추가**

**0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허용된다.
-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후 피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위 채권가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공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⑤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230 페이지 관련선례 모두 식제

### \*\*\* 240 페이지 13번 문제 해설 중 ③ 해설만 수정(다른 해설은 그대로 유지)

#### (종전해설)

③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소속과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 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수정해설)

③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배당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별지 1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 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및 제2호(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참고로, 종전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43 페이지 17번 문제 해설 중 아래 붉은색 부분 삭제

ㄱ.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단서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244 페이지 19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20.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甲, 乙 및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면 乙 및 丙은 자신들의 채무액만큼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다.
- ③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연금이 없으면 공탁일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

해설 : 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착오공탁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245 페이지 1번 문제 및 해설 모두 삭제

\*\*\* 250 페이지 04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05.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 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⑤ 공탁자는 공탁금 중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등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따라 변제공탁(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또는 집행공탁(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우선하게 되므로 그 채권 (가)압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혼합공탁 역시 불가능하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지만 그 원인이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이거나 '채권자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 263 페이지부터 269 페이지 - 참고 혼합공탁... 에 관한 내용 모두 삭제**

**\*\*\* 275 페이지 09번 문제 ① 지문 및 해설 중 ①부분만 수정**

(나머지는 정답까지도 수정 없음)

종전지문 ①

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지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해설 중 종존 ①해설만 아래와 같이 수정**

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289 페이지 09번 문제 다음에 아래문제 추가**

10.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법무사)

①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②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낙, 포기 등 판결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④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것에 한하여 채무의 승인으로써 그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 ⑤

**해설 :** 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 292부터 294 페이지 - 참고 - 소멸시효 완성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 .... 내용 모두 식재**

**\*\*\* 313 페이지 9번 문제 중 ③ 지문만 수정**

(292년 법원사무관)을 (2022년 법원사무관 수정)으로

**종전지문 ③**

③ 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③ 지문 수정**

③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 314 페이지 10번 문제 중 ③지문 및 해설 수정**

(2018년 법무사)를 (2018년 법무사 수정)으로

종전지문 ③

③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③ 지문 수정**

③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착오공탁의 경우에도 공탁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해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규정 신설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착오로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이제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특례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공탁서 양식에서도 회수제한신고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하단에 회수제한에 대한 안내문구가 추가되었다